

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관련 민원 사례

사례 1

거동 불편으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소견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이전 진료내역이 없어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. 처음 방문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이 되지 않나요?

-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로 이전 진료내역이 없어도 작성이 가능한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'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제2017-141호, 2017.8.8.)'에 따라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실 수 있으며, 초진 환자가 의사소견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내원 당시의 상태상에 따라 진찰하고 보호자의 진술을 참고하여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의사소견서 작성지침[보건복지부,대한의사협회,건강보험공단] (2008.4.14.) 참고

사례 2

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찰 등을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았으나 공단에서 안내해 준 발급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. 소견서 발급비용 외 별도 비용을 더 내는 것이 맞나요?

-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는 '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제2017-141호, 2017.8.8.)' 제78조에 따라 발급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.
-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작성 가능한 의사소견서 항목을 진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검사 등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.

사례
3

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. 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하며 *등급은 충분하다고 하였으나, 공단 등급판정 결과를 확인하니 예상된 등급이 아니었습니다. 등급판정을 제대로 한 것이 맞나요?

-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에는 누구도 등급을 확신할 수 없으니 예상 등급 안내를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.